

건강한 국민, 신뢰받는 병원,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 합니다.



사 단
법 인

대한병원협회



SMART 2030

수 신 병원장
참 조
제 목 사고 마약류 처리 절차 안내

1. 관련 근거: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-3753(2021.8.18.)
2. 마약류취급자 등은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)등에 따라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, 폐기 후 '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'에 마약류 폐기 사실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.
3. 이와 관련, 사고 마약류 처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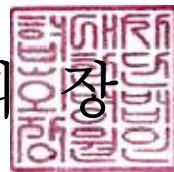
<사고 마약류 처리절차>

- ① (취급자) 마약류취급자 등이 사고 마약류 발생을 인지한 경우, 관할 허가관청에 5일 이내에 발생 사실 보고(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)
※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시, 허가관청에 사고 발생 경위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
- ② (지자체) 사고 마약류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지자체 공무원은 이를 협업시스템(의약품통합관리시스템)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보고
- ③ (취급자)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하려는 경우, 허가관청에 사고 마약류 등 폐기민원 신청(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)
- ④ (지자체) 사고 마약류 등 폐기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은 입회 폐기 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폐기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 및 민원인에게 회신
- ⑤ (취급자) 마약류취급자 등은 폐기처리 결과 회신 공문서의 시행일자를 기준일자로 하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 보고

붙임.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서 및 폐기 신청서 서식

붙임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-협회업무-기획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. 끝.

대한병원협회



사원 이준환 팀장 최명희 국장 장은혜 본부장 김종윤 사무총장 김승열

시행: 기획정책국 제2021-508호(2021.8.19.)

(04165)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/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13 전송 02-705-9219 (대표FAX: 02-705-9209) E-mail: jhlee@kha.or.kr